

2025-12-22

(25-8789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## 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 **통보국가:** 유럽연합

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
2. **담당기관:**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

EU-TBT 질의처,

팩스: +(32) 2 299 80 43,

이메일: [grow-eu-tbt@ec.europa.eu](mailto:grow-eu-tbt@ec.europa.eu)

웹사이트: <https://technical-barriers-trade.ec.europa.eu/en/home>

3. 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 ], 제 5.6.2 조 [ ], 제 5.7.1 조 [ ], 제 3.2 조 [ ], 제 7.2 조 [ ], 기타:

4. 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모양, 부피, 무게, 설계, 재료 구성, 화학적 성질, 용도 또는 목적에 관계없이 제품에 통합되거나 추가되는 배터리 또는 제품에 통합되거나 추가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배터리, 즉 휴대용 배터리, 시동, 조명 및 점화 배터리(SLI 배터리), 경량 운송 수단용 배터리(LMT 배터리),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

5.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특정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형식 및 조화 규격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(EU) 2023/1542의 적용 규칙을 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(8 페이지, 영어), (17 페이지, 영어)

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

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EEC/25\\_09160\\_00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EEC/25_09160_00_e.pdf)

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EEC/25\\_09160\\_01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EEC/25_09160_01_e.pdf)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

EU-TBT 질의처

팩스: + (32) 2 299 80 43

이메일: [grow-eu-tbt@ec.europa.eu](mailto:grow-eu-tbt@ec.europa.eu)

규정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. <https://technical-barriers-trade.ec.europa.eu/en/home>

- 6. 내용:** 본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은 규정 (EU) 2023/1542 의 제 7 조 및 제 13 조에 명시된 라벨링 요구사항의 조화된 시행을 위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. 제 7 조는 탄소발자국 라벨을 다루며, 제 13 조는 배터리에 대한 기타 모든 일반적인 마킹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다룬다.
- 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** 배터리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며, 지속가능한 발전, 친환경 이동성,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중립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. EU 의 제품 정책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EU 내에서 마케팅 및 판매되는 배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고 제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. 제 7 조와 제 13 조는 EU 배터리 규정 2023/1542 의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를 적절히 라벨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다.; 소비자 정보 제공, 라벨링; 환경 보호
- 8. 관련 문서:**
- 지침 2008/98/EC 및 규정 (EU) 2019/1020 을 개정하고 지침 2006/66/EC 를 폐지하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2023 년 7 월 12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(EU) 2023/1542
- 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celex%3A32023R1542>
- 9. 채택 예정일:** 2026-04-20  
**시행 예정일:**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 일
- 10. 의견 제공**  
**의견 마감일:** 2026-02-20  
**통보일로부터 60 일 [X]**  
**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**  
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
EU-TBT 질의처  
팩스: + (32) 2 299 80 43,  
이메일: [grow-eu-tbt@ec.europa.eu](mailto:grow-eu-tbt@ec.europa.eu)